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ID260108-1187
평가금액	14,810,130 원
평가기관 / 평가자	이도감정평가사사무소 / 변득규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30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이도감정평가사사무소 / 변득규	eyJhbGciOiJFUzI1Nils	2026-01-14 14:45: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현산리 산146
소재 물건 (2025-15002-A01)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감정평가서번호: ID260108-1187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도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변 득 규						
감정평가액	일천사백팔십일만일백삼십원정(₩14,810,130.-)					
의 회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 적	공매(국세,지방세)			
제 출 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김일한 (2025-15002-A01)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01.13	2026.01.08 ~ 2026.01.13		2026.01.14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 15,868x- 3 이	토지	5,289.3333 하 여 백	2,800	14,810,130
	합 계					₩14,810,130
심 사 확 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현산리 소재 '현산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공매(국세,지방세)를 위한 감정평가 건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6년 1월 13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6년 1월 8일 ~ 2026년 1월 13일에 실시하였음.

4. 감정평가조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II. 기타 참고사항

1. 물적 동일성 여부 및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2.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 토지는 수인 공유지분의 토지로서 평가대상부분(김일한 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단가를 산정한 후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면적사정하였음.
- ②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입목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③ 본건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④ 본건은 위생지도상 자연림으로 이용중이나 일부 도로, 유지로 이용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이용 상황은 현황 측량을 요함.
- ⑤ 본건 토지는 두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서 소재하나 주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되, 타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현산리 산146	
토 지	용도지역	농림지역
	이용상황	자연림
	지 목	임야
	면 적	15,868 m ² 중 5,289.3333 m 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1. 토지 감정평가액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m ²)
1	비안면 현산리 산146	15,868 X (1 / 3)	임야	자연림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세로(불)	부정형 고지	567

(2)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공시지가 (원/㎡)
A	비안면 현산리 산29	24,838	임	자연림	농림지역	맹지	부정형 완경사지	664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A 농림	1.299	경상북도 의성군 (25.01.01~26.01.13) 2025.01.01 ~ 2025.11.30 : 1.177 2025.11.01 ~ 2025.11.30 : 0.082 (1 + 0.01177) * (1 + 0.00082 * 44/30) ≒ 1.01299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개별요인 비교

■ 임야지대 [일련번호1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0.8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경사등의 자연조건에서 열세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1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용도지역등의 행정적조건에서 우세함.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88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기타
-	마을주변 야산지대	세로변	2,000-4,000	농림지역

본건 지역의 지가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다) 본건 평가사례

본건의 최근 3년 이내의 평가사례는 포착되지 아니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²)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²)	비고
(1)	비안면 산제리 산10口	2,380	농림지역	임야 자연림	2022.08.20	공매(국 세,지방세)	1,100	-
(2)	비안면 현산리 산14口	15,868	농림지역	임야 자연림	2023.05.16	법원경매	2,7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마)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비안면 현산리 산7口-8 외	농림지역 임야/자연림	60,000,000원 (@ 968원/m ²)	2023.05.19 -	61,984m ² -	-
	의견	1)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 토지가격 : 60,000,000원 / 61,984m ² ≈ 968원/m ²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바) 경매 동향

용도별	경북 의성군 2025년 01월 ~ 2025년 12월					
구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임야	5,135,057,876	3,638,839,000	70.9	60	18	30.0

(출처 : 인포케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액 (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액 (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② 보정치 산정

< 비교표준지 A >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액 (a)	사례단가 ¹⁾ (원/㎡)	시점 ²⁾ 수정	지역 ³⁾ 요인	개별 ⁴⁾ 요인	산출단가 ⁵⁾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1,100	1.06101	1.000	2.720	3,174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액 (b)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⁵⁾ (원/㎡)	4.719	4.71
	664	1.01299	-	-	673		

¹⁾평가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1)을 선정함.

²⁾시점수정(2022.08.20 ~ 2026.01.13, 의성군 농림지역) : 6.101% (1.06101)

³⁾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1)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⁴⁾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가 평가사례(1) 대비

개별요인 비교치 (임야지대)				격차율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70	1.60	1.00	1.00	2.720

⁵⁾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단가)(원/m ²)	비고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m ²)							
1	A	664	1.01299	1.000	0.880	4.71	2,787	2,800	임야지대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1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비안면 현산리 산7㉠-8 외	농림지역 임/자연림	60,000,000원 (@ 968원/m ²)	2023.05.19 -	61,984m ² -	-
	의견	1)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 토지가격 : 60,000,000원 / 61,984m ² ≈ 968원/m ²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1 농림	4.809	경상북도 의성군 (23.05.19~26.01.13) 2023.05.01 ~ 2023.05.31 : 0.167 2023.06.01 ~ 2023.06.30 : 0.133 2023.07.01 ~ 2023.07.31 : 0.145 2023.08.01 ~ 2023.08.31 : 0.106 2023.09.01 ~ 2023.09.30 : 0.133 2023.10.01 ~ 2023.10.31 : 0.157 2023.11.01 ~ 2023.11.30 : 0.203 2023.12.01 ~ 2023.12.31 : 0.207 2024.01.01 ~ 2024.12.31 : 2.279 2025.01.01 ~ 2025.11.30 : 1.177 2025.11.01 ~ 2025.11.30 : 0.082 $(1 + 0.00167 * 13/31) * (1 + 0.00133) * (1 + 0.00145) * (1 + 0.00106) * (1 + 0.00133) * (1 + 0.00157) * (1 + 0.00203) * (1 + 0.00207) * (1 + 0.02279) * (1 + 0.01177) * (1 + 0.00082 * 44/30) \approx 1.04809$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개별요인 비교

■ 임야지대 [일련번호1 / 거래사례#1]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1.50	본건이 사례 대비 교통의 편부등의 접근조건에서 우세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70	본건이 사례 대비 경사등의 자연조건에서 우세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10	본건이 사례 대비 용도지역등의 행정적조건에서 우세함.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2.805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단가)(원/m ²)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²)						
1	#1	968	1.000	1.04809	1.000	2.805	2,845	2,8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5)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²)	거래사례비교법 (원/m ²)	비고
1	2,800	2,800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보다 다소 낮게 산정되어 수요성·환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목적에도 부합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14,810,130
	합 계	14,810,130
결정의견	공매로서의 안정성과 환가성 등을 참작하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기 평가액으로 대상부동 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현산리	산146	임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5,868 X 1 3	5,289.3333	2,800	14,810,130	김일한 지분 자연생 입목 포함 분묘 강안 위성사진상 일부 도로, 유지
합 계								₩14,810,13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2. 교통상황	3. 형태, 지세
4. 이용상황	5. 접면도로상황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7. 제시목록외의 물건	8. 공부와의 차이	9. 기타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현산리 소재 '현산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저수지, 임야, 농경지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지세

남동측 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4. 이용상황

자연림(위성지도상 일부 도로, 유지)입니다.

5. 접면도로상황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농림지역(2020-05-2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_1,5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_900㎡ 이상~1,5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전부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7. 제시목록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8.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가 위성지도상 도로, 유지로 이용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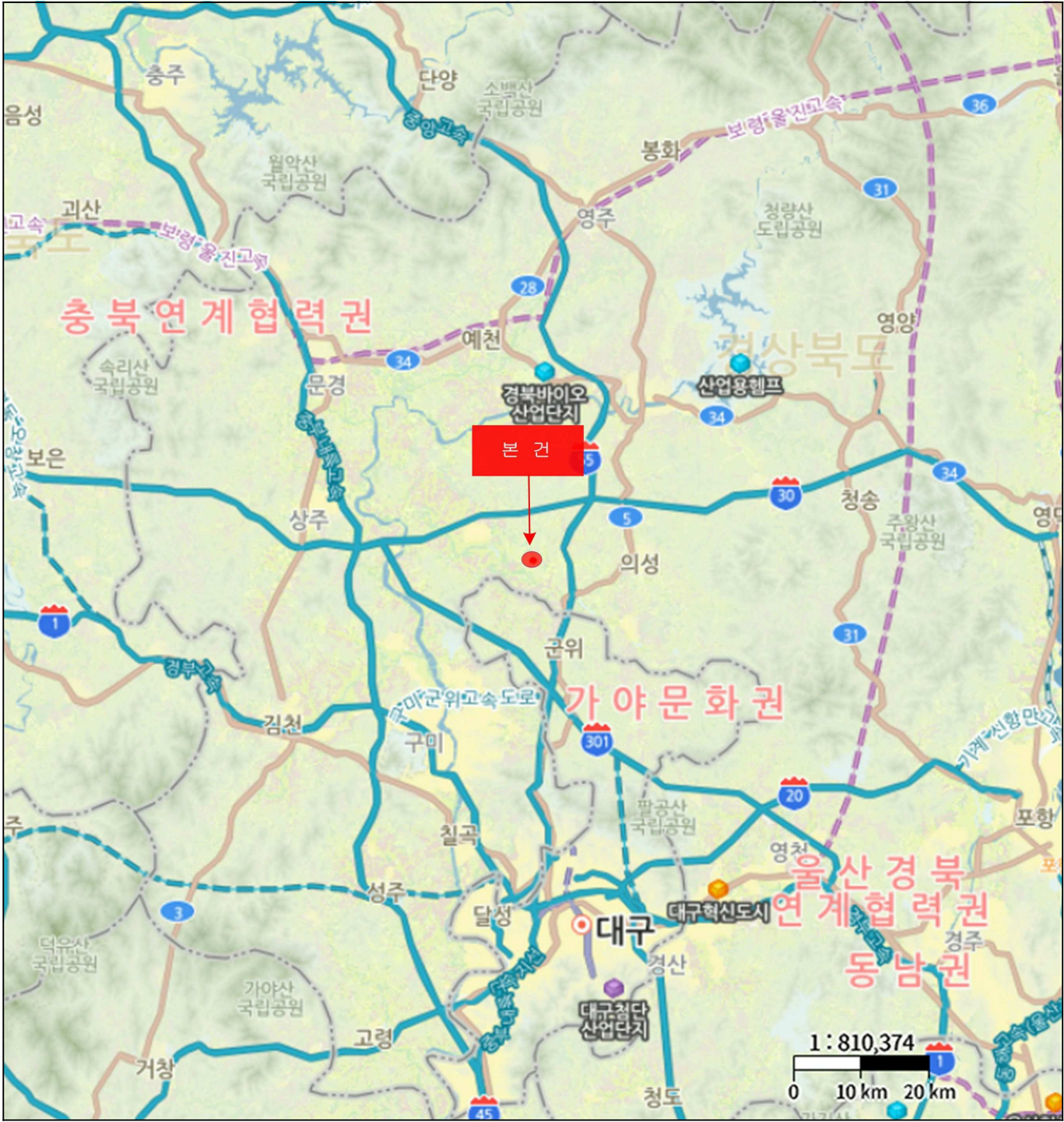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2. 교통상황	3. 형태, 지세
4. 이용상황	5. 접면도로상황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7. 제시목록외의 물건	8. 공부와의 차이	9. 기타
9.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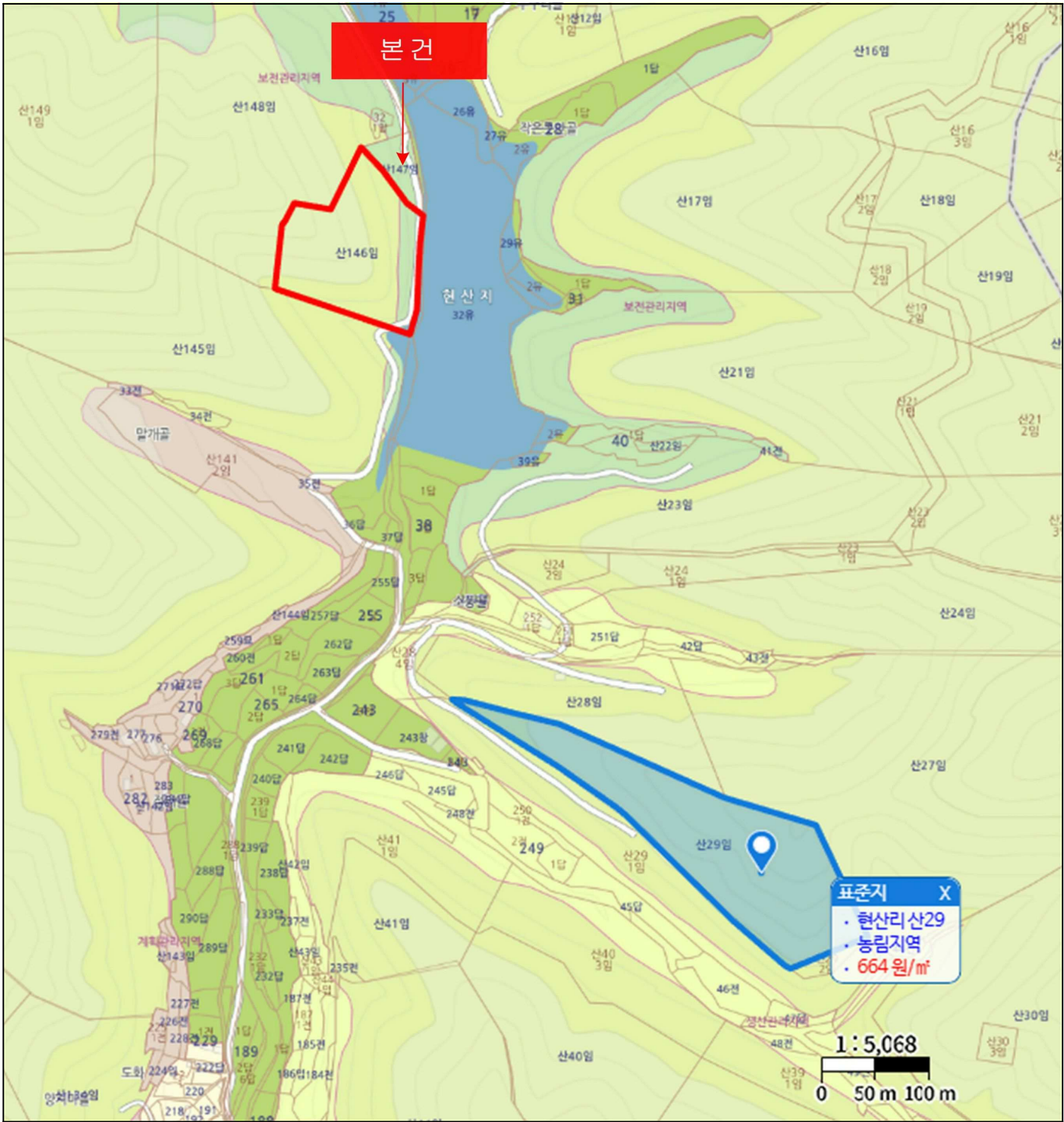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현산리 산14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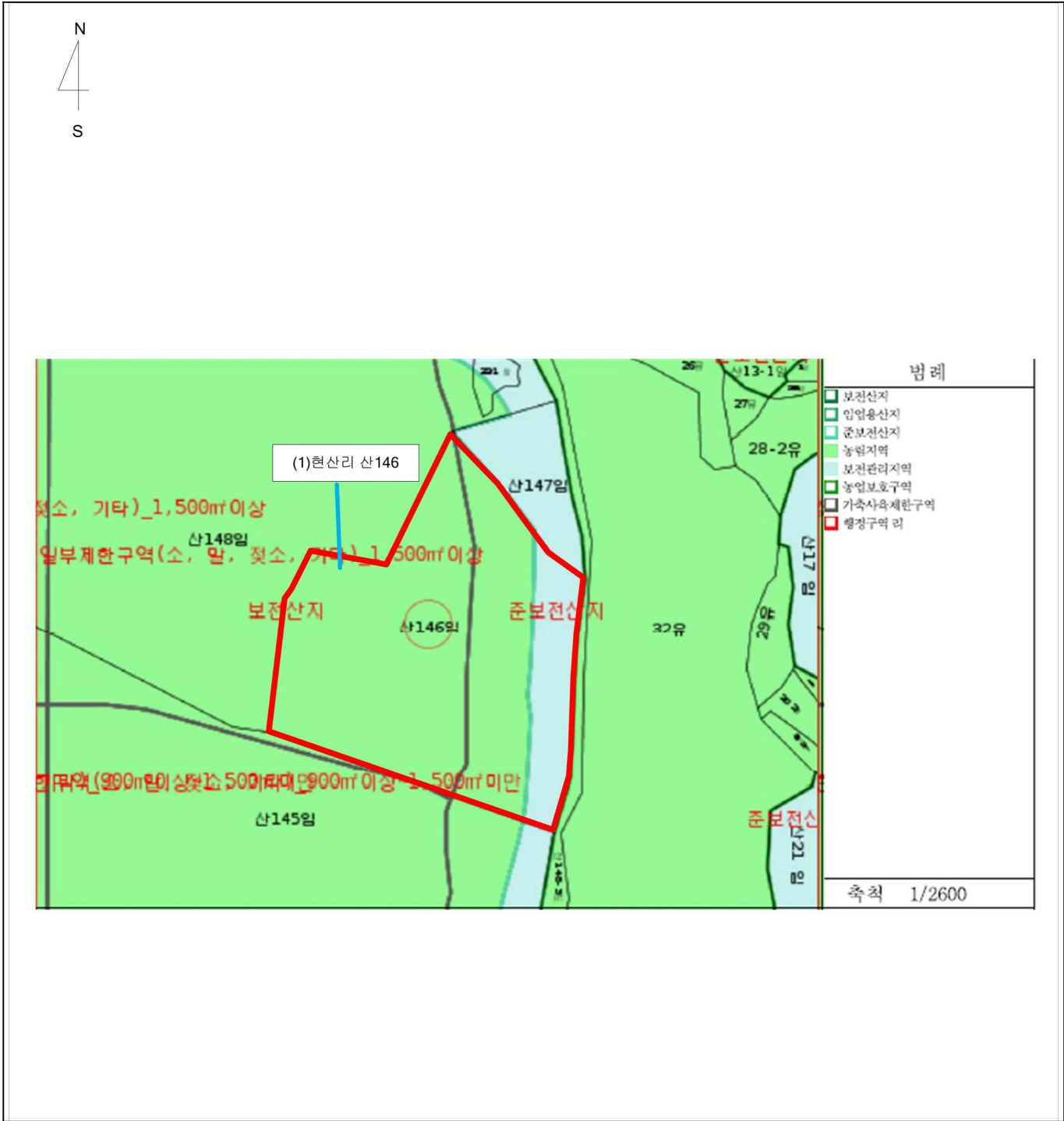
위 치 도



소재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현산리 산146
-----	-----------------------



지 적 도



지 적 도







회 보 서

우)41228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15 (신천동, 동대구역우방아이유셀)
105-2202
E-Mail : emrrb77@KAPALAND.CO.KR

TEL. 070-8810-5852
FAX. 0505-182-3852

문서번호 : ID260108-1187

시행일자 : 2026-01-14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참 조 : 최소은

제 목 : 감 정 의 회 에 대 한 회 보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1. 저희 이도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01.08자 귀 제 『2025-15002-A01』 호로 의뢰하신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현산리 산146 소재 물건 (2025-15002-A01)』 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이도감정평가사사무소

수수료 청구서

(전화: 070-8810-5852, FAX: 0505-182-3852)

문서번호 : ID260108-1187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귀하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6.01.08 자 귀 제 『 2025-15002-A01 』 호로

의뢰하신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현산리 산146 』 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200,000	기본수수료 ≒200,000
실	여 비	97,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3,100	
	기타 실비	4,000	
비	소 계	104,100	
특 별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304,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세		30,400	
합 계		334,4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334,400	

불 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 금 처 ※

대구은행 : 508-13-167629-2(예금주:변득규)

이도감정평가사사무소